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 제2028호 (2013.03.1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일 연장
 - 당 초 : 2013.03.11 ~ 2016.02.29까지(3년)
 - 1차연장 : 2013.03.11 ~ 2017.08.31까지(4년6개월)
 - 2차연장 : 2013.03.11 ~ 2018.08.31까지(5년6개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 입법예고 : 제외대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028호(2013.03.1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조례 제2156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7년 8월 31일”을 “2018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2013.03.11, 조례 제2028호)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부 칙(2013.03.11, 조례 제2028호) 제2조(한시기구) ---------- ---------- -2018년 8월 31일까지 ---------- ------.